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46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 강명구·김소희·김기현

서명옥 · 김민전 · 김형동

엄태영 · 고동진 · 조은희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국가유공자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 39조의2).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의 제목 "(장례서비스)"를 "(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2 중 "따른"을 "따른 고독사 예방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8(장례서비스) <신 설>	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
	<u>비스)</u>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
	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
	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
	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u>①</u> (생 략)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underline{2}$ 제 1 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u>③</u> 제2항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	
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u>④</u> 제2항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①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	
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	
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4. (생 략)
- 4의2. 제8조의8에 <u>따른</u> 장례서 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 5. ~ 8. (생략)
- ② ~ 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따른 고독사</u>
예방 및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